##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5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김성주・이형석・임호선

허종식 • 고영인 • 김윤덕

송재호 · 정춘숙 · 신영대

박광온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영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사용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의 발생 우려에 따라 하나의 영업장에 대해 한명의 영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되, 같은 영업자가 둘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정한 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2019년 5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식품시설에 대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시설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시설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유시설의 영업 관리 제도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2, 제44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75조, 제89조의2 및 제101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유시설"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공유시설의 운영업 및 이용업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영업의 시설 및 같은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을 하여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6항 전단 중 "가공업"을 "가공업(공유시설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시설의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공유시설의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시설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유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 2. 공유시설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 3. 식중독 등 식품사고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 4. 공유시설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 ③ 공유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⑦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2(보험 가입)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시설의 운영업 또는 이용업을 운영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조·가공업소"를 "제조·가공업소(공유시설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로, "식품접객업소 또는"을 "식품접객업소(공유시설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을 "식품접객업소(공유시설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생상태를"로 한다. 제75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식품안전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자 등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1조제3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의2. "공유시설"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u>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u>
	여러 영업자가 함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u>을 말한다.</u>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9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	
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u>&lt;후단 신설&gt;</u>	<u>이 경우 영리를 목적</u>
	<u>으로</u> 식품의 제조·가공·조
	리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② (생략)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⑤ ㅈ (생 략)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군수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유시설의 운영업 및 이용
<u> 언</u>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
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영업
의 시설 및 같은 영업자가 여
러 종류의 영업을 하여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세37조(영업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가공업(공유시설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u> 포함한다)</u>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 ① (생 략) <신 설>


⑦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시설의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한다. 다만, 공유시설의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시설 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유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 2. 공유시설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 3. 식중독 등 식품사고 원인 조

<u>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u> <u>지원</u>

- 4. 공유시설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 ③ 공유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야 하는 영업자가 위생관리책 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 설>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본다.

- ⑦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 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

제44조의2(보험 가입) 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시설의 운영 업 또는 이용업을 운영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 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 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u>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u> 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 할 수 있다.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7조(위생등급) ①
	제조ㆍ가공업소(공유시설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
	<u>다)</u> <u>식품접객업소(공유시설에</u>
	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
	한다) 또는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등급 지정 등) ①
	- <u>식품접객업소(공유시설에서 조</u>
	리 · 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의 위생상태를

② ~ ① (생 략) ② ~ ① (현행과 같음)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 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 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 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 서 청소년의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 가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 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 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신 설>

11. ~ 19.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01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신 설>

- 10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 한 경우
- 11. ~ 19.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89조의2(식품안전관리 지원)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자 등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 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 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 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3 -----
  - \_\_\_\_\_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방해한 자
  -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u>&lt;신 설&gt;</u>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
	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u>으로 기록·보관한 자</u>
<u> &lt;신 설&gt;</u>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u>한 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